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3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
· 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10개통·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 개정

- 통·리장 10명 증원 : 610개 통리장(통장 439, 리장 171)
⇒ 620개 통리장(통장 448, 리장 172)
- 산동면 1명, 선주원남동 2명, 인동동 7명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조례안 붙임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산동면 봉산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봉산1리	1	봉산1리	봉산1리 일원
봉산2리	1	봉산2리	봉산2리 일원

별표 중 선주원남동 48통란 다음에 49통란 및 50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9	1	49통 구역일원
50	1	50통 구역일원

별표 중 인동동 64통란 다음에 65통부터 71통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5	1	65통 구역일원
66	1	66통 구역일원
67	1	67통 구역일원
68	1	68통 구역일원
69	1	69통 구역일원
70	1	70통 구역일원
71	1	71통 구역일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지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면(이하□□행정면□□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-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□□행정동·리□□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81조(이장의 임명)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
이장을 둔다. <개정 2010.11.2>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